

제 28 회 CCFAC 회의 보고

최 관 섭 / 삼영식품원료공업(주) 대표이사

1996년에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열렸던 FAO/WHO 합동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소위원회(약칭:CCFAC)에서 35개국 대표 145명과 31개 국제기관의 대표 44명이 참가하여 4박5일간 식품첨가물 일반기준과 오염물질등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다음은 여기에서 토의된 요점을 간추려 적어본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

제21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하 CAC로 약칭) 회의 및 관련 소위원회로부터 제기된 중기계획의 실행, 벌크상태로 수송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과학적 원칙 및 실시사항에 관하여 원칙적인 규격 및 권장사항에 대한 확인과 함께 또한 「식품중의 오염물질 및 천역독에 대한 일반기준」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분석 및 샘플링 소위원회」에서 설정된 오염물질의 일반분석법에 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21회 「어류 및 어류제품 소위원회」로부터 요청한 원재료에서 기인되는 이산화유황의 새우류통조림과 관련제품의 국제규격에서의 최종제품에의 연장에 대하여는 여러나라로부터 다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터-키대표로부터 요청한 건조사킨 아프리코트규격에 있어서의 2산화유황의 상한치를 2,000에서 2,500mg/kg으로 인상하는 것에 관하여는 다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였고 터-키대표도 다음차례의 CCFAC에서 그 제안이유 및 정보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9회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소위원회」로부터 요청한 식용소금 국제규격에 있어서의 염화나트륨 함량을 감량키로 한 제안에 대하여는 그 제품은 주로 가정내에서 소비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2. 「식품규격에의 리스크아나리시스의 응용에 있어 FAO/WHO 합동전문가회의」의 보고서 검토

제21회 CAC에서는 상기 전문가회의의 권장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하나 리스크아나리시스에 쓰여지는 용어 및 정의를 재차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보고를 수령하였다. 이것에 대하여는 「일반원칙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21회 CAC에서는 전문가회의 보고와 권장에 대하여는 각 관련소위원회로 부터도 검토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의 토의된

리스크 아나리시스에 관련한 최근의 활동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또 잔류농약의 섭취량예측법 지침의 개정전문가회의에서 토의된 바와 같이 동물약, 농약,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에 관하여 조화를 이룬 평가를 할 중요성에 대하여도 확인하였다.

3. 제46회 JECFA의 요점보고

지난 1996년 2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6회 JECFA 회의의 요점이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되었다.

3개의 화학분류에 포함되는 대략 50종류의 향료를 제44회 JECFA에서 확인된 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현재의 사용수준이라면 안전성에 대하여 염려할게 없다고 결론내렸다.

아프라툭신 B₁ B₂ G₁ G₂ M₁ M₂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나 완전한 평가작업이 끝나지 않아 다음회로 이월하였다.

95의 물질에 대한 식품첨가물규격에 관해 검토되어 37물질의 새로운 규격이 만들어졌다. 56물질에 대하여는 개정되어 1물질은 현재대로 놓아두기로 하였다. 또 1물질에 대하여는 규격은 설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규격은 FAO의 Food and Nutrition Paper(FNP) 52로 출판된다.

일반사항으로서 JECFA는 규격에 관하여는 또 다른 국제적으로 인지된 기관의 규격과의 조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여 식품첨가물의 납, 중금속 규격치의 감축, 비소규격치의 삭제 등이 검토되었다.

「식품규격에의 리스크 아나리시스의 응용에 관한 FAO/WHO 합동전문가회의」의 제언에 의거 발표평가에 관하여 검토는 JECFA와 같은 전문가회의에 따르기로 하고 JECFA는 다음 모임부터 또 다른 여러 나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증원을 결정하였다.

JECFA에 제출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제출마감일을 지키지 않아서 위원회에서의 검토자료작성에 지장이 막심해 데이터제출시점의 중요성을 호소하였다.

4. ADI 및 독성학적권장의 변경에 따른 필요행동

제46회 JECFA의 토의에서는 이제까지의 ADI는 그대로 보류하고 다시 새로운 ADI는 설정되지 않음으로써 본부회(本部會)로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JECFA에서는 몰식자산(沒食子酸)의 도데실, 옥칠 및 프로필염에 관하여 합동으로 약물속도론적(藥物速度論的) 및 대사에 관한 추가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부회로서는 프로필염의 ADI는 그대로 유지하고 따라서 다시 처리할 필요가 없음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도데실염과 옥칠염에 관한 ADI는 "Not allocated"에 변경되어 앞으로 JECFA에 의한 ADI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염류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의 일반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5. 코-덱스 식품규격의 양식 및 각각의 코-덱스 소위원회에서의 수속에 관한 메뉴얼 개정

「식품첨가물의 일반기준」(이하 GSFA로 약칭)중에서 본부회와 각각의 식품별 소위원회와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반원칙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본부회에서는 코-덱스 위원회 가이드 라인인 「수속메뉴얼」에 포함시키는 사항에 관하여 여러가지 제안을 검토하였다. 한편 제21회 CAC에서는 GSFA의 완성까지는 현재의 수속을 보류함으로써 식품첨가물의 규정을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식품규격의 양식에 대하여는 CAC는 GSFA가 완료할 때까지는 식품첨가물의 조항은 코-덱스 식품규격의 필수조항으로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본부회는 CAC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승인하고 「일반식품원칙 소위원회」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수속메뉴얼」의 개정제안을 정리하였다.

6.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한 분석법 검토

각 나라로 부터의 제안에 따라 수정된 리스트가 카나다 대표로부터 소개되고 다시 WG에 의한 우선순위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승인하였다.

- ① JECFA에 의하여 ADI가 설정되어 진 것
- ② 코-덱스에 의하여 설정되어진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의 규정
- ③ 제안된 방법의 확인과 승인
- ④ 국제무역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던가 일으킬 염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 ⑤ 주요한 식품이나 식품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

7. 코-덱스 규격에 있어서의 식품첨가물 사용상한치 확정

본부회는 지난번 회의 이후 사용상한에 대한 제안이 없으므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

8. 코-덱스에 의한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 「식품첨가물의 일반기준」(GSFA)에 따른 섭취량

본 위원회에 의한 리스크평가를 코-덱스 소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 CAC의 권장 및 지난번의 본부회에 있어서의 섭취량 평가에 관한 검토를 취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본부회에서는 영국대표로부터 제안된 섭취량의 추측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부회는 영국대표가 제안한 4단계법(4 tiered approach)에 대하여 이 방법으로도 한계가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 4단계법을 추진하면서 불확실성의 주요요인을 확인하고 다시 추가정보를 포함시킴과 같은 가장 유효한 수단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 중에는 ADI에 근접할지도 모를 식품첨가물의 섭취량을 추정하기 위한 각나라의 식품섭취량 데이터도 포함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JECFA와 본부회간에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GSFA 작성업무의 전개에 맞추어 영국대표가 제안한 섭취량의 평가는 시기적절하였다고 생각하며 보다 좋은 섭취량 평가방법의 개발을 계속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부터는 체중이라던가 지역별 식생활의 상위에도 배려하여 금후 이 분야의 처리에 대하여 JECFA에도 의존하여야 할 일이라는 중요성도 확인하였다.

9. 「식품첨가물의 일반규정」(GSFA)검토

GSFA는 미국의 A. Rulis가 위원장, D. Keeke가 부위원장, 덴마크의 B. Fabeck가 서기를 맡고 있는 작업소위원회에 의하여 취합되어 왔다.

본부회는 작업소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이하 10~15사항에 대하여는 설득권고하였다.

10. 산화방지제 및 보존료의 요약 워크 시트(Compressed Work-sheet)에 관한 검토

이 간추린 워크 시트는 참가국으로부터 제출된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여러가지 수준의 요약이 예상되었다. 본부회는 요약의 일람표를 최종의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나 유용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다.

11. 증점, 안정제 및 감미료에 대한 검토

본부회는 금회에 취합한 증점, 안정제(Stabilizer, Thickner) 및 감미료(Sweetener)의 데이터에 관하여는 이미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산화방지제 및 보존료 때문에 설정된 원칙을 기준하여 최종적으로 GSFA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미국대표는 이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하였다.

12. 섭취량평가에 대한 의견조정

본부회는 섭취량 평가안에 대하여 제출된 각나라로부터의 의견을 검토하고 원안을 작성한 영국은 이들의 의견을 배려하여 원안을 개정하기로 요청하였다.

13. 코-덱스 식품확인 시스템

여러 대표자로부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예를 들면 아시아의 어떤지역에서 많

이 소비되고 있는 식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본부회는 세계속에서 소비되고 있는 모든 식품을 이 시스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분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식품의 소비실태와 식품분류와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식품분류는 식품에 관한 기술적인 기록에 지나지 않으며 식품첨가물의 규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부회는 벨지움대표가 CIAA(유럽식품 음료산업연합)의 협력으로 식품확인시스템(Food Identification System)의 사용에 관한 설명문을 작성하고 GSFA에 포함시키기 위한 원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본 건은 미국대표가 취합하고 있는 일반 기준에 있어서도 응당히 고려되는 것이다.

14.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있어서의 기술적 근거와 필요성 검토

지난번 본회의에서 GSFA의 작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의 하나는 기술적 근거와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및 아이슬란드가 그 원안을 취합정리하기로 하고 다음회까지에 각 나라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양해하였다. 본건도 GSFA에 삽입하게 된다.

이 경우 섭취량평가에 관한 문제와 기술적 근거에 관한 문제는 명확히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15. 「식품첨가물 일반기준」(GSFA)의 작업소위원회로 부터의 보고

제21회 CAC에서 식품첨가물의 식품중에서 기간연장과 관련되는 조문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제기된 것을 본부회는 현재의 본문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연장의 원칙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어떤 식품첨가물은 어떤 원재료 또는 다른 소재가 GSFA의 규정에 준하는 식품의 제조에만 사용될 경우에는 그들의 원재료에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 GSFA에

관하여 앞으로 개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정의 수속에 따라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 수속의 원안을 미국대표가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개정절차에 관하여는 GSFA에 삽입하기로 한다.

개정대상이 되는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추가 또는 삭제, 식품분류마다에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새로운 사용상한, 새로운 대상품목의 추가, 개정 또는 신규 ADI의 설정 등을 포함한다.

금후 대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로서 본부회는 착색료(Colors), 발색제(Color retention agents), 증량제(Bulking agents) 및 유화제(Emulsifiers)에 관하여 이제까지의 것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ADI를 특정하지 않는다”라고 한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또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식품첨가물의 부정적인 목록도 작성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본부회는 이 제안에서는 합의하지 않았다.

미국대표는 산화방지제, 보존료에 관하여 또 가능하면 안정제, 중점제, 감미료에 까지 이제까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하여 이번에 검토된 원칙과 수단에 맞추어 원안을 작성하여 각 나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안하여 양해되었다.

16. 식품첨가물의 확인과 순도의 규격에 대하여 제44회 JECFA로 부터의 제안검토

각 나라로부터의 의견을 검토한 분임조의 대표는 미국 P. M. Kuznesof의 보고에 의해 Categorie I, II에 기록되는 13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코-덱스 권장규격(Codex Advisory Specification)으로 하여 다음번 본위원회에서 채택되도록 제안하기로 합의하였다.

JECFA에 의하여 취소산(臭素酸)카리움은 소맥분의 처리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제언되고 있으나 이것들은 가령 예를 들면 맥주용맥아 제조때와 같이 몇 가지의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배려하여 우선은 기록에 남겨두기로 했다.

17. 국제번호(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 INS)의 개정

비공식인 분임조가 편성되어 호주의 S. Brooke Tayler가 좌장자리를 맡아보면서 INS에 대하여 개정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효소처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카르복시메칠세루로스(Carboxymethyl Cellulose)에 대하여 INS 469 및 가수분해에 의한 포리-1-디센스(Hydrogenated Poly-1-Decenes)에 INS 907을 삽입하는 것을 합의하고 다음회의 CAC에 제출키로 하였다.

또 이 INS의 개정에 관하여는 금후 상설의제(常設議題)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8. 가공보조제의 개정표(改正表)의 수정

지난회에 독일대표로부터 제안되어진 보조제의 개정표에 대하여 재차 수정이 제출되어 검토하였다.

본부회는 가공보조제의 표에 대하여는 1989년의 CAC본회의에서 채택된 양식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 표에 대하여는 금후 관련사항 중에서 매회 의논할 수 있도록 상설의제로 하기로 하였다.

19. 코-덱스규격의 오염물질 최고 허용치에 대한 채택과 개정

본부회는 오염물질 최고허용치에 대하여는 제27회 이후 제안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0. 코-덱스 리스크평가 및 리스크 관리의 순서 : 「식품중의 오염물질 및 천연독의 일반기준」(GSC) 작성에 있어 공중위생을 확보키 위한 방책

영국대표로부터 오염물질의 기준치 설정법의 제안과 권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것은 GSC중에 앞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영국대표가 덴마-크 및 네델

란드의 협력을 얻어 취합하기로 하였다.

미국대표는 작업의 책임분야에 관한 발표와 리스크평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JECFA의 책임이며 한편 리스크관리는 본부회가 갖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 오염물질의 상한치 설정은 발표와 관련하여 중대한 건강장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각국대표 및 WHO대표는 공히 GEMS(세계환경 감시 시스템)식품계획은 오염물질의 상한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으로 활용될 정도로 신뢰도 높은 데이터-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한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본부회는 금후 공개발표평가가 GSC와 관련하는 가운데 실행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영국, 덴마-크 및 네델란드 대표가 다음회까지 언급하기로 지도의 견을 취합하기로 하였다.

21. 「식품중의 오염물질 및 독성물에 관한 코-덱스 일반기준」(GSC)의 검토

덴마-크 및 네델란드 대표가 취합한 GSC에 대하여 각국정부로부터의 의견을 검토한 후 본부회는 Annex I, II, III¹⁾을 채택하여 Step 5로서 제21회 CAC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본부회로서는 오염물질의 상한은 일반대중에게 중대한 리스크를 주고 또 국제무역거래에 잘 알려지고 있던가 또는 예상되는 문제에만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Annex I, II, III에 관하여는 제22회 CAC에 Step 8로 제안되도록 개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1) Annex I :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maximum levels in foods

Annex II : Procedure for risk management decisions

Annex III : Format of the standard

다음으로 Annex IV, V²⁾에 관해 검토하여 작업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이고 비소, 석(錫), 패투린(Patulin)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금후 비소에 대하여는 덴마크가, 석에 대하여는 호주, 인도네시아, 타일랜드가, 또 패투린에 대하여는 불란서 및 영국이 담당하여 제29회 CCFAC에 앞서 각 나라에 회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검토자료를 취합하기로 양해하였다.

본부회는 Annex IV(A), IV(B)에 대하여는 일반정보이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며 GSC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들에 대하여는 수정한 IV(A) 및 IV(B)를 제29회 본부회 전에 발표되도록 송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Annex V에 대하여도 검토한 후 오염물질 때문에 식품분류 시스템은 이제까지의 식품첨가물 및 농약에 관한 식품분류 시스템과 일치시킬 것 등이 합의되었다.

Annex IV 및 V에 대하여는 수정한 후 제43회 코-덱스 집행위원회에 Step 5로 채택되도록 제출하여진다.

22. 식품 및 사료중의 마이코톡신

① 아프라톡신에 관한 의견서

영국대표는 적절한 리스크 메네이지먼트 원칙에 의거하여 식품과 사료중에 아프라톡신의 량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저의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의견을 설명하였다. 이중에는 분석과 샘프링법, 오염방지안의 실제적인 대책, 대책의 근거 및 무역상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도 기술하고 있다. 아프라톡신에 관한 또 다른 특정연구는 다른기관에서 하고 있으나 이것들에 대하여도 앞으

2) Annex IV : Annotated list of contaminants and toxins

Annex V : Food categorization system to be used in the GSC

Annex V - A : Complementary food categorization system for the GSC

Annex V - B : Situation review of contaminants and toxins in foods

로는 검토대상으로 할 것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발표 예상치와 과대예상치, 무역조화의 곤란성, 사료의 오염과 우유와의 관계, 소비자보호에 관한 예방책의 비용대효과 등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다.

본부회는 FAO 및 WHO가 마이코톡신의 오염예방과 관리,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워-크 샵이나 훈련계획을 통한 활동에 대하여도 확인하였다.

JECFA는 다음 회의에서 아프라톡신으로 기인하는 암발생의 가능성과 리스크예상치도 추정할 예정이다.

본부회는 이 보고서를 수정하여 GSC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② 우유중 아프라톡신 M_i의 상한치안(案)의 검토

제27회 CCFAC는 아프라톡신 B_i과 M_i의 JECFA에 의한 독성평가가 완료할 때까지 상한치안(案)을 Step 7에 유보할 것, 또 제안된 0.05µg/kg에는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였음을 합의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나라의 대표가 이 상한치를 달성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또 분석과 샘프링의 방법은 재현성이 곤란함도 기술하였다. 한편 다른 여러나라의 대표는 현재의 우유 및 우유제품의 무역을 생각해 보면 소비자보호의 필수사항이라고 제안한 상한치를 지지하였다.

WHO대표는 본부회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업무중의 하나로 허용한 리스크의 수준을 정하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부회는 JECFA에 의한 아프라톡신의 재평가가 될 때까지 제안된 상한치를 Step 7에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23. 피-넛의 총 아프라톡신의 코-덱스 가이드라인과 샘프링계획 검토

피-넛중의 총 아프라톡신 상한치와 샘프링계획이 제21회 CAC에서 Step 5에 채택되고 있다. 이 안을 지지하는 나라들은 이 상한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체적인

최소치로서 이 이하의 농도로 설정하여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이 상한치는 국제무역에서 미가공품으로 적용된다.

다른 대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낮은 기준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본부회는 가공용의 피-넛중의 총 아프라톡신의 챔프링계획과 상한치를 $15\mu\text{g}/\text{kg}$ 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였다. 이것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Step 6에 되돌려 보내고 특히 낮은 기준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하여 의견을 수집하기로 하였다.

24. 산유동물용(產乳動物用)의 사료 원료 및 강화사료중의 아프라톡신을 줄이기 위한 기준 검토

카나다대표가 제27회 본부회에서 수정키로 결정하였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본부회는 원안중의 1.3절의 우유에 섞여 나올수 있는 특정의 사료를 삭제할 것, 2. 2.3절의 “고습도의 조건하에서 화력전조할 때의 리스크”의 참고자료를 삭제할 것도 합의하였다.

본부회는 오염된 사료의 혼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하여 검토한 후 2.5.3.3 및 2.5.3.4절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본부회는 규범의 제안에 따라 Step 5로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다음의 코-덱스 역원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25. 오크라독신A의 의견서

지난번 본부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스웨덴 대표가 오크라독신A에 대한 의견서를 종합해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독성평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한치와 섭취량을 취합, 오크라독신류의 곡물중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제안을 하고 또 오크라독신A의 출현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위생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본부회는 이 제안에 대하여 분석법, 챔프링법, 무역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위생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본부회는 이 제안에 대하여 분석법, 챔프링법,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위생기준작성의 가부 등을 검토하였다. 또 JECFA에서 두번씩이나 오크라독신 A가 빌암성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본부회는 여기에 근거하여 혹시 상한을 $5\mu\text{g}/\text{kg}$ 으로 설정했을 때의 경제상의 문제, 각양각색의 다른 품목에서의 상한치 및 무역마찰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다.

26. 식품에서의 공업 및 환경에 유래되어 오는 오염물질

지난회의 식품위생분과소위원회에서는 「식품위생의 일반원칙」을 개정완료하고 Step 8로서 제22회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것에 관하여 본부회로서는 이 일반원칙은 공업 및 환경에서 유래되어 오는 오염물질을 피하기 위한 일반규정을 설정할 장(章)을 만들었을뿐 당면 대응책은 제출하지 않기로 양해되었다.

27. 납의 상한치 제안

제27회 CCFAC의 결정에 따라 납의 상한치에 대한 제안이 텐마-크 대표로부터 설명이 되었다. 이 제안중에는 독성데이터의 평가, 예상되는 전장문제, 섭취량과 코-덱스 및 각 나라의 상한치에 대하여 발표되고 있다.

본부회에서는 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배려, 분석법, 분석실의 신뢰도, 원료로부터 가공품에의 환산, 상한치의 필요성, 모든 발표에 대한 식품에의 중요성등을 검토하였다. 이때 각 지역별 식습관과 체중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또 특정의 품목에 있어서의 상한치 설정을 요한다.

본부회는 이 제안서에 대하여 Step 3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다.

28. 곡류, 두류에 있어서의 카드뮴 및 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각국의 의견검토

제20회 본 위원회는 제29회 「곡류 및 두류의 부회(部會)」(CCCPPL)의 결정에 따

라 Step 6의 가이드라인, 카드뮴(0.1mg/kg) 및 납(0.5mg/kg)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각 나라의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CCCPL이 연기됨으로써 CCFAC에서 이 문제를 이제부터 검토하기로 하였다.

본부회에서는 납과 카드뮴의 함량은 식품품목에 따라서 매우 폭넓게 변하고 있으므로 이 제안에 대하여 Step 6에 반송하고 다시 검토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29. PCB 및 다이옥신의 검토

네델란드 대표가 작업부회에서 취합한 검토결과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PCB 및 다이옥신에서 예측되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검토결과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다.

30. 식품중의 카드뮴, PCB, 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多環芳香族炭化水素) 시안화합물에 대한 각국의 의견

이 전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요건의 검토를 우선할 필요성 때문에 정보수집 등을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그러나 본부회는 카드뮴에 대한 정보는 계속 수집하는 것으로 양해하였다.

31. JECFA에 의한 우선적 평가의 제안

JECFA는 평가의 우선품목에 대하여 검토한 소위원회의 제안에 합의하였다.(첨부자료 참조)

본부회는 JECFA는 「식품첨가물의 일반

기준」의 작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ADI가 특정하고 있지 않는 것 및 ADI가 제안하고 있는 것의 검토를 가할 필요는 있으나 이 작업이 JECFA에서 제안된 다른 제안의 우선성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 CCFAC의 정당화를 기도할 일이다.

JECFA에 의한 평가를 제안되고 있는 품목

Alinerm 97/12(Appendix XI)

식 품 첨 가 물	제안자
Alpha-acetolactate decarboxylase	덴마-크
Enzyme-hydrolyzed carboxymethyl cellulose	핀란드
Flavouring agents	USA/UK
Hydrogenated poly-1-decene	핀란드
Maltogenic amylase	덴마-크
Salatrim(Short-and long-chain acid triacylglycerol molecules)	멕시코 에집트
오 염 물 질	제안자
Aflatoxins B, G and M	CCFAC
Cadmium	USA/일본
Dioxins and dioxin-like PCBs	CCFAC
Ethyl carbamat	CCFAC
Nitrate	네델란드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덴마-크/ 네델란드
Trichochecenes	네델란드